



## 외국의 세제

# 캐나다의 주 및 기초단체세

### 류 금 렬

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세제1담당

캐나다는 12개주(province)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주 산하의 기초단체로는 시, 타운, 디스트릭트 등의 지방정부(기초단체)가 있다. 이하에서는 캐나다의 연방정부와 동부지역 3개주가 공동세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Harmonized Sales Tax와 British Columbia주, Québec주 및 Ottawa시의 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I. Harmonized Sales Tax

### 1. 개관

1997년 4월1일부터 Nova Scot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주의 소매세(retail sales taxes) 및 이들 지역의 연방정부의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통합되어 연방정

부와 지방<sup>1)</sup>의 공동세인 부가가치세 형태로 변경되면서 조세의 명칭도 Harmonized Sales Tax(HST)<sup>2)</sup>로 정해졌다. HST는 종전의 GST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이며 세율은 15%이다. 15%의 세율중 7%는 연방정부의 세입이 되고 나머지 8%는 지방의 몫이 된다.

Nova Scotia주와 New Brunswick주는

- 1) 캐나다나 미국 등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는 주(캐나다의 province, 미국의 state) 산하의 기초단체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지방」을 HST에 참여한 위에 말한 3개주와 Labrador시를 포함하여 연방정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Harmonized Sales Tax(HST)는 종래 연방정부가 과세해온 재화·용역세(GST)와 주정부가 과세해온 소매세(retail sales tax) 소비세를 통합하여 단일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를 굳이 직역한다면 통합판매세 또는 단일판매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HST로 사용하기로 한다.

HST의 도입으로 실효세율이 3.77%나 인하되었으며, Newfoundland and Labrador 주는 4.84%가 감소되었다. 세율의 인하와 과세대상의 확대는 각종 재화와 용역간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제한된 지역에서의 HST 채택은 캐나다 전역에 걸친 HST 시행 목표를 향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HST는 소비자와 영세기업에 보다 공평하고, 영세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연방정부와 지방간에 재정적 협조(fiscal co-operation)와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1) HST의 장점

새로운 단일 HST는 단순·공정하고 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세제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① 기업들은 HST의 시행에 따라 중간재(inputs)에 대해 주정부가 과세해온 소매세의 폐지, 세율 인하, 납세의무 이행비용(compliance cost)의 경감 등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른 상품 가격의 인하로 소비자들도 이익을 받게 되었다.

② 기업은 1종의 납부서식, 적용 법규의 단일화, 세무 행정의 단일화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그 외에도 기업이 사업의 중간재에 대한 HST를 환급받게 되므로 기업들간의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③ 사업의 중간재에 대한 과세를 폐지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종전의 주 소매세제에 내재하고 있던 높은 세부담을 완

화함으로써 HST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있어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④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소비세를 과세하던 것을 단일화함에 따라 세무행정 경비(administrative costs)를 절감할 수 있다.

⑤ HST의 도입으로 조세체계가 통합되고 세율도 단일화됨에 따른 혜택도 있게 된다. 종전 Nova Scotia주와 New Brunswick주에서 적용되던 실효세율은 18.77%였으며, Newfoundland and Labrador에서는 19.84%였다. HST는 15%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므로 상당한 세율 인하가 이루어진 셈이다.

#### 2) 단일 과세표준, 단일 세율, 단일 법규

HST의 주요한 요소는 단일화된 적용 법규와 서식, 단일화된 세무행정이다. 또 HST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대하여 단일한 과세표준과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HST의 운용은 기존의 재화용역세(GST)의 규정들을 흡수한 소비세법(Excise Tax Act)에 근거한다.

HST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GST 납부를 위해 등록을 해둔 납세자는 새로이 등록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HST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goods and services)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미시행 지역 거주자라 할지라도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HST를 납부하게 된다.

HST를 신고납부할 때 납세자는 15%의 세율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연방분과 지방분

에 대한 별도의 구분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HST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종전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이행해오던 것을 연방정부 국세청(Revenue Canada)이 HST의 세무행정을 단일 창구로 수행함에 따라 납세의무의 이행이 용이해졌다.

### 3) 埋沒租稅의 제거

종전에 주정부가 과세하던 소매세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구입하는 중간재에 대해 과세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한 세금은 완성된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전가되었다. 이렇게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조세를 매몰조세(embedded tax)라고 한다. HST의 주요한 장점중의 하나는 이러한 중간재에 대한 과세 면제를 통해 매몰조세를 없애고 가격과 조세를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HST 시행 지역에 입지한 기업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HST 미시행 지역으로의 수출시에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 2. HST의 개요

### 1) 기본 내용

HST는 종전의 일반소비세를 기본으로 하는 단일 부가가치세(single value-added tax)이다. HST의 근거법은 소비세법이다. HST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15%의 세율

로 과세된다. HST의 세무 행정은 연방국세청(Revenue Canada)이 담당하고 있다.

### 2) 과세대상(tax base)

HST의 과세대상은 종전의 재화용역세의 과세대상이었던 재화와 용역이 된다. 기초생필품, 처방약품 및 의료 서비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3) 납세의무(liability for tax)

HST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HST의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HST가 시행되는 지역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유형동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은 재화를 배달받는 곳이 HST 시행지역인 경우

② 무형동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무형동산은 사용지를, 용역은 이를 수행하는 곳이 HST 시행지역인 경우

③ 부동산(real property)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HST 시행지역인 경우

납세지의 결정은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이중과세 방지 또는 탈세 소지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특정 서비스, 무형동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

자동차, 승객 및 화물 운송서비스, 체신 및 통신 서비스와 단체 관광이다.

HST 미시행 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HST를 신고납부(self-assessment)해야 한다. 이것은 비상업활동, 비등록 중소기업자나 소비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HST 시행지역에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의 재화용역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면 된다.

캐나다 전역에서 재화용역세 사업등록자는 HST 시행지역으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한 HST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4) HST의 환급

중전의 재화용역세의 중간재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HST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등록자는 중간재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간재 공제혜택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소비, 사용 또는 등록자의 사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배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른 주로 이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주분 HST가 환급된다. 또 물품의 사용 예정지에서 이미 소매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HST 미시행지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시행지역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이루어진다.

#### ① 비영리단체에 대한 환급

HST를 도입한 주들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에 대해 주분 HST를 환급한다.

#### ② 공공단체에 대한 환급

재화용역세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닌 일부환급(partial rebate)이 이루어졌다. 환급대상은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ies), 학교, 공립대학으로서 각각 57.14%, 83%, 68%의 환급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환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주정부의 재원이 연방정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HST가 도입된 후 Newfoundland and Labrador주는 HST 도입전보다 세부담이 낮거나, 주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New Brunswick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는 주분 HST의 57.14%를 환급받는다. Nova Scotia주에서는 기초단체, 병원, 학교, 공립대학이 환급대상이다.

#### ③ 주택에 대한 환급

Nova Scotia주에서는 주된 주택(primary place)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된다. 이러한 주택의 범위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공동주택 등을 포함된다.

#### 5) 신고 의무

과세대상 물품이나 재화의 공급액이 6백

만 달러가 초과되는 등록자는 매월 신고해야 한다. 50만 달러 초과 6백만 달러 이하인 자는 분기 단위로 신고한다. 50만 달러 이하인 자는 연 단위로 신고한다. 분기 단위 신고의무자는 월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연 단위 신고의무자는 분기 단위 또는 월 단위 신고가 가능하다.

### 3. 세금 포함 가격

HST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전에 조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 (tax-inclusive pricing)을 알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 소비자들은 HST 도입시 이러한 점이 반영되도록 요구해 왔으며, 하원 재정위원회의 주요 권고 사항이기도 하였다. 소비자가 구매시에는 상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역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b>James 백화점</b>	
HST#34567234	
2:36 PM Apr 15, 97	
비누	\$5.00
빵	\$1.00
구매액계	\$6.00
HST	\$ .75
청구금액	\$6.75

### 4. HST의 과세

#### 1) 기본 내용

HST를 도입한 주에서 재화 용역 및 무

형동산을 소비·사용·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모든 등록자는 영세율(zero-rated) 또는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HST 시행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급에 대해 HST를 징수할 의무를 진다. 시행지역내 주들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동일한 조건의 사업활동 여건을 제공한다. 공급지 과세원칙(place-of-supply rule)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납세의무의 이행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급지 과세원칙은 시행지역내외에서 재화와 용역의 구입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과세대상별 공급지의 구분에 대해 보기로 한다.

#### 2) 유형동산의 공급

가) 판매용 유형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공급

유형동산을 HST 시행지역에서 수요자가 배달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제조된 것으로 본다.

<예 4-1>

Newfoundland(시행 주)에 있는 소매업자인 John이 스트레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주는 공급지로 간주되고 John은 HST를 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

<예 4-2>

HST 미시행 지역의 주에 있는 부품제조업자가 New Brunswick(시행 주)에 있는 조립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New

Brunswick주에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HST의 과세대상이 된다.

<예 4-3>

HST 미시행 지역에 있는 자동차 리스 회사가 월별 임차료를 받는 조건으로 HST 시행지역의 거주자에게 24개월간 리스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차료는 HST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리스 기간 중 리스를 받은 자가 HST 미시행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용역세 7%가 과세된다.

나) 판매용 이외의 유형동산의 공급

① 임대(rentals)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유형고정재산의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지의 원칙에 따라 임대 물건의 사용지가 HST 시행지역인 경우에는 HST가 과세된다.

<예 4-4>

어떤 사람이 Nova Scotia(시행 주)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7일간 임차하여 다른 주로 여행을 간다면 Nova Scotia주는 공급지가 되며 HST의 과세권을 갖는다.

② 리스(leases)

위에서 말한 임대해당되지 않는 임대는 리스(리스 기간이 3월 초과)에 해당되며 리스는 일련의 각 기간별로 독립된 공급(a series of separate supplies for each period)으로 본다. 따라서 이 일련 공급기간별초를 기준으로 주로 사용하는 장소(ordinary location)가 속하는 주에서 과세권을 갖는다.

<예 4-5>

New Brunswick(시행 주)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판매인이 노트북 pc를 2년 기간으로 리스하여 그 주의 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New Brunswick주를 공급지로 본다. 따라서 동주가 과세권을 갖는다.

③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공급

㉞ 부동산의 공급(supplies of real property)

부동산의 소재지가 HST 시행지역이면 그 지역에서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Labrador(시행 지역) 주에서 소재한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HST의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공급지(소재지)가 HST 미시행 지역이면 재화용역세의 세율 7%가 적용된다.

㉟ 부동산 관련 서비스의 공급(supplies of services in relation to real property)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도 서비스를 받게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된다. 위의 부동산의 경우 Labrador주가 납세지가 된다.

미시행 지역의 공급지가 되면 재화용역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3) 무형동산의 공급

일반적으로 무형동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 다음과 관련되는 것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캐나다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 로 사용되는 권리(rights)
- 캐나다에 소재하는 부동산
- 유형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서 주로 캐나다에 있는 것
- 캐나다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수행되는 용역. 이 경우 용역의 공급이 다음 조건에 이루어지면 특정 HST 시행 주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다.
  - 권리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가 그 시행 주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 등

#### 4) 자동차의 판매

HST의 일반적인 공급지 원칙은 사업자 등록자에 의한 새차와 현차의 매매시에도 적용된다. 자동차를 HST를 미시행 지역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7%의 재화용역세(GST)를 징수하며, 취득자가 이를 HST 시행지역으로 반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소에서 8%의 세율을 적용한 HST를 징수한다. 자동차를 외국에서 취득하여 HST 시행지역으로 반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GST(7%)를 징수하고 등록시에 HST(8%)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자동차를 HST 미시행 지역의 재화용역세(7%) 징수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HST 시행지역에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15%의 세율로 HST를 납부해야 한다.

#### 5) 화물운송 서비스(freight transportation services)

화물운송의 목적지가 HST 시행지역이면 화물운송 서비스의 공급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목적지에서 HST를 납부해야 한다.

#### 6) 원격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

원격통신 서비스가 다음 조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HST 시행 주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 통신의 발신과 수신에 이루어지는 주 예를 들면, HST 시행 주내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그 통신이 타주에 있을지라도 시행 주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 HST를 징수한다.
- 통신의 발신과 수신에 HST 시행 주에서 이루어지고 요금이 그 주에서 부과되는 경우
- 통신의 발신과 수신, 요금을 부과하는 주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발신지 주를 공급지로 본다.

### 5. HST 시행 주에 반입되는 재산과 용역에 대한 과세

HST 시행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시행 지역에서 재화와 용역을 반입하여 시행지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



우에는 자진신고 납부 대상이다. 주요 자진 신고 납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시행지역의 주민이 미시행 지역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시행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 시행지역의 주민이 미시행 지역 거주자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광고, 법률 등)가 그 시행지역내에서 제공되거나 주로 소비되는 경우
- 시행지역의 주민이 미시행 지역으로부터 무형동산(프랜차이즈<sup>3)</sup> 운영권 등을 취득하여 그 시행지역에 소비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경우

자진신고 납부의 목적은 구매의사 결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HST 미시행 지역에서 구매를 하든 시행지역에서 구매를 하든 1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 II. British Columbia州의 州稅 制度

British Columbia주의 주세는 세목별로 각각의 단행법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3) franchise는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이러한 독점권을 바탕으로 연쇄판매 조직이 형성된다. 이때 권리를 주는 기업을 franchiser, 체인 구성원을 franchisee라고 한다. 전자는 후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원재료·상품의 독점공급·경영지도·판매촉진원조 등을 제공한다. 또 후자는 계약에 따라 입회금을 내고,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전자에게 지급하여 투자는 대부분 전자가 행한다.

### 1. 소득세(income tax)

소득세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와 법인소득세(corporation tax)로 나누어진다. 양자의 근거법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이며 모두 연방정부에 의해 징수되어 캐나다 관세 및 세입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과 주정부 간의 조세징수협정(federal/provincial tax agreement)에 따라 주정부에 배분되었다. 그러나 2000과세연도부터 연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표로 하여 바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30,004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8.4%, 30,004달러에서 60,009달러인 경우에는 12.4%, 60,009달러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12.35%가 적용된다. 산출된 세액에서 각종 공제가 이루어지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줄어든다. 이러한 세액제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의료공제, 장애인공제, 교육비공제 등이 있다. 또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부가세(surtax)가 부과되는데 그 세액이 5,300달러 초과시 초과금액의 30%를 세액으로 하며, 세액이 8,66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5,300달러 초과시 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이 세액이 된다.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16.5%이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세율은 2000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5.5%에서 4.75%로 인하되었다.



## 2. 법인자본세(corporation capital tax)

법인자본세는 일반법인의 경우 조정불입 자본(adjusted paid-up capital)의 0.3%의 세율로 과세된다. 은행과 신용회사 및 신용조합은 3%의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은행 등의 순불입자본(net paid-up capital)이 10억 달러 이하이거나 본사가 British Columbia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족농장, 비영리법인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 3. 사회서비스세(social service tax)

사회서비스세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구매 또는 임차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격 또는 임차료의 7%로 과세한다. 주류 구매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승용 또는 승합차에 대해서는 7~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가격이 32,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7%, 32,000~34,000달러는 9%, 34,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로 과세한다. 과세대상 물건의 판매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의 형태로 징수하여 납부한다.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1) 식료품, 의약품 등 기초 생필품(basic necessities of life)
- 2) 농업, 어업, 광업을 사용하는 물품
- 3) 산업용 안전용품 또는 구명자켓 등

일반 안전용품

- 4) 건물의 단열재, 풍력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물질 또는 설비

환경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납과 산이 함유된 배터리(lead-acid battery)와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서는 정액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교통사업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자동차의 단기간 렌트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부과된다.

## 4. 부동산양도세(real property transfer tax)

부동산양도세는 부동산의 양도자에 대해 과세한다. 과표는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된다. 세율은 거래가격이 200,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 거래가격이 2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0달러 초과금액의 2%로 누진과세한다.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의 주된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 주택의 양도
- 2) 가족 농장(family farm)의 양도
- 3) 문서로 된 이혼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부부간의 재산 양도
- 4) 지방정부, 등록된 자선기관 또는 교육 기관에 대한 재산 양도
- 5) 제대군인 토지법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재산 양도 등

### 5.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

과세대상은 농촌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이다. 과표는 평가법(Assessment Act)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이 된다. 세율은 농지와 임야는 0.05%, 주거용 부동산은 0.102%, 레크리에이션용·비영리단체용 부동산은 0.17%, 공익사업용(utilities) 부동산은 0.42%, 주요산업용 부동산 및 관리되지 않는 임야 0.45%, 사업용 및 기타 부동산은 0.37%이다.

### 6. 학교세(school tax)

학교세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residential school tax)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non-residential school tax)로 나누어진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표는 평가법에 의해 결정된 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이 된다. 세율은 학교구(school district)에 따라 다르며 그 범위는 0.25~0.9%이고 평균은 0.37%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표는 평가법에 의해 결정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이다. 부동산 종류별 세율은 레크리에이션용·비영리단체용 부동산은 0.45%, 관리되지 않는 임야는 0.23%, 농지는 0.68%, 관리되지 않는 임야는 1.2%, 주요 산업용·공익사업용 부동산은 1.25%, 사업용 및 기타 부동산은 0.99%이다.

### 7. 호텔숙박세(hotel accommodation tax)

호텔숙박세는 호텔숙박세법(Hotel Room Tax Act)에 근거하여 숙박요금을 과표로 과세하며 세율은 8%이다. 이 중 1.65%는 British Columbia주의 관광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관광공사(Tourism British Columbia)에 배분된다. 주 산하의 기초단체나 특수지역구 등은 8%의 세율 외에 추가로 2%의 범위 내에서 세율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적인 세율 적용으로 얻어지는 세수는 반드시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호텔숙박세의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숙박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 2) 병원 또는 요양원에 의해 제공되는 숙박
- 3)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숙박
- 4) 호텔객실이 숙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 5) 선박 또는 열차에서의 숙박
- 6) 1일 숙박요금이 20달러 이하인 경우
- 7) 수용인원 4인 미만의 숙박시설에서의 숙박 등

### 8. 연료세(motor fuel tax)

연료세는 각종 내연기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연료를 과세대상으로 과세된다. 압축천연가스와 자동차에 사용되는 메타놀과 에타놀

의 혼합 비율이 85%인 연료는 비과세된다. 장애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임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400달러까지 환급 된다. 연료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무연 휘발유(unleaded gasoline)

세율은 리터당 11센트이다. 주정부에서 징수하여 다음과 같이 관내의 기관에 배분 하고 있다.

○ BC교통재무청(BC Transportation Financing Authority)에는 리터당 3.25센트가 배분된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페리공사(British Columbia Ferry Corporation)에는 리터당 1.25센트가 배분된다.

○ 광역 밴쿠버 교통청(Greater Vancouver Transportation Authority)에는 동 청의 관할 지역 내에서 징수되는 연료세 중 리터당 4센트가 배분된다.

○ 빅토리아 지역교통위원회(Bictoria Regional Transit Commission)에는 리터당 2.5센트가 배분된다.

2) 프로판 가스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프로판 가스는 가 격의 7%의 세율로 과세한다.

3) 기타 자동차 연료(motive fuel)

기타 연료라 함은 자동차 연료로서 무연

휘발유, 천연가스, 프로판가스, 부탄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말한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리터당 0.5센트의 환급이 이루어진다. 세율은 리터당 11.5센트이다. 이 세율에는 BC교통재무청에 배분되는 리터당 3.25센트, 브리티시 컬럼비아 페리공사에 배분되는 리터당 1.25센트와 광역 밴쿠버 지역구(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에서 징수되는 세액 중 리터당 4센트를 포함한다.

4) 유색 연료(colored fuel)

유색 연료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리터당 3센트의 세율로 과세한다.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연료는 비과세 대상이다.

5) 항공연료(aviation fuel)

터빈으로 추진되는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도 리터당 3센트의 세율이 적용된다.

6) 제트 연료(jet fuel)

제트 연료는 터빈으로 추진되는 비행기의 연료를 말하며, 세율은 국내 운항기용 연료는 리터당 5센트이며, 국제선 항공기용 연료는 리터당 2센트이다.

7) 定置 機關用(stationary engine) 천연 가스

건물의 내부에 설치된 기관용(파이프라인 콤프레셔 제외)인 천연가스는 구입가격의 7%의 세율로 과세된다. 그 천연가스가 구매된 것이 아니면 810.32리터당 1.1센트의 세율이 적용된다.

8) 가스압축 콤프레서용 천연가스

판매용 가스를 수용가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콤프레셔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는 810.32리터당 1.9센트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스전으로부터 가스처리 시설까지 가스를 보내기 위한 파이프라인 콤프레서용 천연가스는 810.32리터당 1.1센트의 세율로 과세한다.

9) 선박용 연료

선박용 연료에 대해서는 가격의 7%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9. 담배세(tobacco tax)

담배세의 세율은 킬로그램 1개비당 11센트이며, 시가의 세율은 소매가의 77%이나 개당 5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말지 않은 담배는 그램당 11센트이다.

10. 경마세(horse racing tax)

경마세의 세율은 경마권 발매금액의 7%이다. 그러나 그 중 7분의 3만 순수한 주정부의 세입이 되고 나머지는 경기마 사육자에 대한 장려금, 사육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경마 코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12. 보험세(insurance premium tax)

보험세는 보험금을 과표로 하여 자동차 또는 일반보험은 4%의 세율이 적용되며, 생명보험, 질병보험, 사고보험, 급료상실보험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이나 회사 등의 농업소득의 50%는 감면되며, 종교·교육·자선단체 등은 면제대상이다.

13. 벌목세(logging tax)

벌목세는 벌목으로 얻은 소득에 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과표가 되는 벌목 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말하며,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의 과세시 제외된다.

14. 광산토지세(mineral land tax)

광산토지세는 광산용 토지의 평가가액을 과표로 하여 과세한다. 광산용지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는 헥타르당 1.25~4.94달러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정된 토지는 헥타르당 4.95달러의 세율이 적용된다.

## 15. 광물세(mineral tax)

광물세의 과세대상은 석탄, 砂金, 석회석, 백운석, 대리석, 화산재, 혈암, 점토, 규조토 등의 광물이다. 석탄과 일반광물은 순 현금매출(net current proceeds)의 2% 또는 순수입(net revenue)의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금은 광물 판매가의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 Ⅲ. Québec주의 세제

Québec주의 2001-2002 회계연도<sup>4)</sup> 총세입을 세입원별로 보면 소득세(personal income tax)가 38.8%, 소비세가 23.7%, 법인세 20.8%, 세외수입 9.1%, 공기업 수입 7.8%로 구성되어 있다.

### □ 소비세제(consumption taxes)

#### 1. 판매세(Québec Sales Tax : QST)

판매세는 소매세를 대체하기 위해 1992년에 도입되었으며, Québec주의 기간 세목이다. 주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세인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 Tax : GST)와 QST가 과세되며, 세율은 GST 7%, QST 7.5%이다. 처방이 필요한 약품과 일반 기초 식료품은 GST의 과세대상이 되나, QST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 Québec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협약에 의해 GST와 QST의 세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gistrant)는 과세대상 물품과 용역을 판매시에 GST와 QST를 징수하여 주정부 세입국에 납부해야 한다. 영세사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며 GST와 QST의 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다만, 신축주택이나 상업용건물의 판매에 따른 GST의 징수의무는 진다).

GST에는 투입세액공제제도(input tax credit)가, QST에는 모든 제품과 거래단계마다 과세되기 때문에 투입세액환급(input tax refund)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고 공제나 환급을 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도는 다단계 과세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cascade taxation)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판매세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세무행정을 용이하고,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ST의 세율은 7%이고, QST의 세율은 7.5%이다. 특이한 것은 QST의 과표는 판매가에 GST를 더하여 산출한다는 점이다.

#### 2. 보험세(Taxes on Insurance)

4)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에 개시된다.

### Premiums)

보험료는 그룹 생명보험, 건강 또는 사고 보험료의 9%로 과세된다. 개별 생명보험, 건강 또는 사고보험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험세는 전체 소비세의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세는 타주의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과세되고 있다. Ontario주와 Newfoundland주의 경우에는 소매세( retail sales tax)의 형태로 과세된다. Ontario주는 8%의 세율로 과세(자동차보험은 5%)하며, Newfoundland주는 12%의 세율로 과세되나, 유체동산(personal corporeal property) 과 관련된 보험에 한정하여 과세된다.

### 3. 연료세(Fuel Tax)

연료세는 휘발유, 프로판가스, 항공기 및 기관차 연료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연료세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연료세의 세율

연료별	Québec주	연방 소비세
휘발유		
-일반세율	15.2(센트/ℓ)	10.0(센트/ℓ)
-몬트리올 交通區	16.7	10.0
연료유	13.3	4.0
프로판가스	8.2	-
항공기 및 기관차연료	3.0	10.0

연료에 대해서는 위 표에 의한 세금 외에도 GST와 QST가 과세된다.

### 4. 담배세(Tobacco Taxes)

담배세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 킬런 : 개비당 2.18센트
- 각런 : 그램당 0.72센트
- 잎담배 : 그램당 0.33센트
- 기타 담배: 그램당 1.65센트

담배세는 도매업자가 특별징수하여 익월 말일까지 주정부 세입국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소매업자는 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담배세의 세율은 주마다 자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세율은 주간에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세율이 낮은 주나 미국으로부터 담배의 밀수가 성행한다는 점이다.

### 5. 주류세(Taxes on Alcoholic Beverages)

과세대상이 되는 주류는 맥주, 와인, 증류주(spirits)의 3종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주류의 주류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맥주 44%, 와인 34%, 증류주 22%로 되어 있다.

세율은 맥주의 경우 리터당 40센트이며, 그 외에도 7.5%의 QST가 부과된다. 맥주가 업소에서 판매된 경우에는 업주가 주류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담금(duty)을 납



부하게 된다.

와인과 증류주의 세율은 리터당 89센트이며 QST(7.5%)도 부과된다. 업소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주류세 대신에 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류에 대해 연방세로는 GST와 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알콜의 함량에 따라 다르다.

주류세의 경우도 담배세와 같이 세부담이 낮은 지역으로부터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상당한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 □ 소득세제

퀘벡주의 소득세제는 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income tax),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 자본세(tax on capital), 고용주의 건강서비스기금부담금(employer contribution to the health services fund)이 있다.

자본세는 민간회사와 상업적 성격의 공사(commercial government corporation)의 자본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capital)이라 함은 불입자본(paid-up capital)을 말한다.

건강서비스기금부담금은 민간법인과 공공법인을 포함한 법인이 고용주로서 부담하며 과표는 총급여가 되므로 일반급여세(general payroll tax)라고도 한다.

## IV. Ottawa시의 재산세 제도

###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Ottawa시는 시 자체의 재정과 교육위원회(school boards)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징수한다.

재산세는 Ottawa시가 과세하는 유일한 시세이다.

### 2. 납기(due dates)

재산세는 연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 중간납부: 3.22까지 전년도 재산세액의 50%를 납부
- 최종납부: 6.21까지 납부

### 3. 납부

재산세 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납부  
전화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화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시 기관(Ottawa Client Service Centres)에 납부

시청과 산하의 기관에도 현금, 수표, money orde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3월22일부터 다음해 6월21일까지는 오후 5시30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수납시간이 지난 후에도 수납 관공서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함(drop-off box)에 투입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정부가 자기의 구좌에서 지정한 날짜에 인출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전 인출허용 납부제(pre-authorized tax payment)를 실시하고 있다.

<매월 초일 자동인출(first day of the month bank withdrawals)>

12개월간 재산세를 분할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은행 구좌에서 자동인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전년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여 일단 분할납부하고 맨 마지막 달에 정산하게 된다. 처리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매월 15일 자동인출(mid-month bank withdrawals)>

매월 초일 자동인출 방식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인출일을 매월 15일로 하는 점이 다르다.

<2회 분할납부(two installment due dates)>

3월22일에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다음해 6월21일에 자동 인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 3.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1.25%의 가산금(penalty)가 부과된다. 가산금은 복리로 계산되지 않으며, 기한의 제한없이 계속 매월 가산된다. 체납이 3년 이상 계속되면 과세권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다.

### 4. 재산 평가

온타리오 주정부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평가를 위한 기구로서 온타리오 재산평가원(Ontario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 OPAC)을 설립하고, 1998년 12월 31일부터 평가업무를 이관하였다.

재산평가원의 website

[http://www.opac.on.ca/html/pages/produ\\_serv/index.htm](http://www.opac.on.ca/html/pages/produ_serv/index.htm)

재산평가원은 6월30일을 평가기준일(valuation date)로 하여 주내 전역에 걸친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평가된 자료는 오타와시를 비롯한 주내 각 기초단체의 재산세 세액산출의 자료로 활용된다.

재산평가원은 시장정보를 입수, 다음과 같이 재산을 유형별로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다.

- 주거용 재산 : 매매가격으로 평가(the selling price a property)
- 사무실용 건물 : 임대수입(rental income)
- 산업용 건물 : 대체비용(the cost to replace a property)

주거용 재산에 대한 세액은 재산평가원이 산출한 평가액에 기초단체가 정하는 재

산세율, 주정부(province of Ontario)가 정하는 교육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평가액 × 기초단체 세율 = 기초단체 분 재산세액
- ② 평가액 × 교육세율 = 교육세분 재산세액
- ③ 납부세액 = ① + ②

재산평가원의 평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원에 재심청구(request for reconsideration)를 할 수 있다. 재산평가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독립심판기관인 평가심의위원회(Assessment Review Board)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결정은 청구인과 재산평가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 5. 재산세의 부과취소 · 감면 · 환부

시의회(city council)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부과취소(cancellation), 감면(reduction), 환부(refund)를 할 수 있다.

- ① 수리 또는 레너베이션(renovation)으로 과세기간중 최소한 3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② 최종 평가대장이 확정된 후 비주거용 건물(non-residential property)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③ 최종 평가대장이 확정된 후 비과세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경우
- ④ 화재 또는 멸실, 중대하고 명백한 평

가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gross and manifest error in the assessment)

- ⑤ 납세의무자의 질병 또는 극도의 궁핍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 6.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징수유예

65세 이상의 노인과 온타리오 장애자보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재산세 징수유예(deferral)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는 당해연도의 재산세에 한하며, 체납세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징수유예 신청은 매년 해야 한다. 이는 매년 징수유예 자격이 되는 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징수유예는 웹 사이트, 이메일,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7. 자선사업에 대한 환급

최근 온타리오주에서는 자선사업(charities)에 대한 재산세 환급제도(rebate)가 도입되었다. 자선사업자는 납부세액중 최소한 40%를 환급받게 되며, 환급율은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환급신청은 1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이다. 환급액의 50%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나머지 50%는 120일 이내에 환급된다. 자선사업자의 범위는 소득세법(Canada Income Tax Act)에 규정되어 있고, 캐나다 관세세입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으로부터 등록번호

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선** 사업자가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  
40%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